

토론회

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 일 시 | 2016년 7월8일(금) 오전 9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회 순 ————■

- 사 회

- 김 이 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 주 제 발 표

- 전 삼 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 김 선 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신 석 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 제 발 표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 전 삼 현 (송실대 법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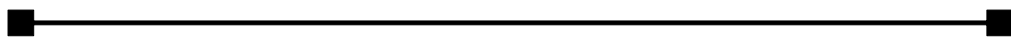
■ 토 론

최근 상법개정안에 대한 관견

- 김 선 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 신 석 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주제발표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전 삼 현
승실대 법학과 교수

I. 문제제기

2016년 7월4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김종인 대표가 재벌총수를 겨냥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별도선임,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사외이사 임기제한 및 자격강화,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권 보장하여 재벌총수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의 지배권을 통제함으로써 소수주주와 우리사주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상시적 경영권 위협상태에 직면하도록 법제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회사법은 경영권 안정을 통한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제도화 해왔으며, 현재도 선진 각국은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륙법계의 경우에는 경영권 안정과 소수주주의 경영참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고 있으며, 영미의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보다는 경영권 안정에 비중을 두어 회사법체제를 유지해 왔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의 법제도를 운영해 오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법제도 위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영권안정을 위한 법제도는 빼고 경영권 견제에 필요한 법제도만 도입하여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회사법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 이후 대한민국 회사법제는 경영권 통제는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경영권안정은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개인재산을 기업에 직접투자하는 동기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경제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대주주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내자본시장에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해외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국

1) 2015년 6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 총저축률은 36.5%로 전기대비 1.8%p 상승하였고, 국내총투자율은 전기대비 0.6%p 하락한 28.1%를 기록하였으며 국외투자율은 8.6%로 전기대비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2015년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회 여야의원 122명²⁾이 공동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경영권과 투자

경영권이란 최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재산권의 일종이다.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굳이 거액을 투자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경제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투자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등의 총액보다 회수금이 적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투자하는 것으로서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투자의 목적은 권리취득인데, 당해 권리란 투자한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권리 향유(수익향유권) 또는 경영권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이 이러한 수익 향유권과 경영권을 제한하는 경우 투자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김종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익향유권보다는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회사법의 기본 본질에 반하는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총투자의 규모가 달라진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부를 축적한 재산가들이 그 재산을 토지에 투자하지 않고 산업에 투자했던 모험정신이 있었다. 결국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통한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재산가들의 열망이 오늘날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난 40-50년간 주식회사제도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는 굳이 수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주식회사제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발의한 이번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주식회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자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투자율이 2011년부터 점차적으로 하락하다가 2013년 2분기에 이르러 급속히 하락한 바 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외 108명, 국민의당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의원 등 10,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I. 상법개정안의 법리 검토

1.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2002년 참여정부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법 분야에서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모회사의 주주들은 자회사의 이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회사 주주들에게는 유익한 제도일 수 있으나, 자회사의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에 자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회사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모회사의 소수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자회사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의 투자유인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더욱이 자회사는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모회사관계의 확산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사업다각화를 차단할 수는 있으나 경쟁제한성 없는 소유집중에 대하여도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출현을 막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소를 불문하고 기업들에게 위험관리차원에서 추구하는 사업다각화를 법률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와 기업들 스스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거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유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일본이 이 제도를 법제화했으나 100%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번 상법개정안은 입법방법이 부적절하고 법익균형성 차원에서 볼 때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투자제한적 입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세히는 권재열, 이중대표소송의 허부에 관한 입법례 검토, 기업소송연구 2013, 기업소송연구회 (통권11호), 5면 이하 참조.

2.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우리 상법은 IMF 외환위기 당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상법 제382조의2). 이는 단순투표제하에서는 50% + 1주를 가진 최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2대 주주 이하의 주주들도 이사선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98년 집중투표제 도입 당시 이 제도로 경영권분쟁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임의법제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인의원 등은 집중투표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 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선택적으로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정관에 배제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실은 현재도 집중투표제는 일본에 비하여 반강제적인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집중투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를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면 단순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⁴⁾ 따라서 1998년 개정상법 시행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집중투표제의 시행을 배제한 곳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변경을 하지 못한 기업들은 현재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3. 4. 1 현재 정관규정으로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수는 코스피 시장 상장회사 722개사(외국회사 5개사 제외) 중 665개사로서 상장기업 전체의 92.1%에 달하고 있다. 즉, 57개사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현재는 1997년 개정상법 시행 전에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의 시행을 배제한 기업들도 반드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김종인 의원 등은 출석한 주주들이 특별결의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변경도 무시하고 강제로 집중투표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이유는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들 간의 극심한 경영권 확보경쟁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부주가 이를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⁶⁾ 대부분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일본도 집중

4) 서울고등법원 2010.11.15. 선고 2010라1065. 이사건에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5) 박수영, 집중투표의무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KERI 칼럼 2013.8.23, 한국경제연구원.

6) 집중투표제는 미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1870년에 일리노이주에서 회사법을 통해 강행규정으로

투표제 규정이 있지만 실시하는 기업은 단지 몇 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배제하고 있지만 실시하는 기업들도 있다. SK나 포스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SK의 경우 지난 수년간 소버린의 집중투표제 실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즉,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투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외국계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글로벌 기업이 아니면서 1대주주나 2대주주간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된 기업의 경우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면 2대주주의 자본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의 합작법인인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 상호 적절한 견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단, 비상장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가 효율성을 제고하는지 여부는 기업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상법을 개정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집중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중투표실시 규정을 둔 경우에만 허용하는 positive 시스템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현행 negative 시스템(opt-out 방식)을 미국처럼 positive시스템(opt-in 방식)으로 법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집중투표제 실시의 강제화는 외국인 주주가 많은 상장기업들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여 우리 자본시장을 외국자본의 먹튀 천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집중투표는 법으로 반 강제화 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중 집중투표제를 불가피하게 실시한 상당수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한 먹튀의 제물이 된 경험을 갖고 있다. 더욱이 집중투표의 의무화는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가 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것이며, 이는 대규모 투자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는 개정안처럼 무조건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처럼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싶어 하는 기업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 경제현실상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처음 채택되었다. 그 이후 1880년까지는 7개 州가, 1900년까지는 18개 州가 강행규정으로 채택했다. 1945년에는 37개 州가 강행규정으로, 15개 州가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 1950년대 이후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주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매우 작은 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6개 州만이 집중투표제를 강행규정화하고 있다.

7) 현재 집중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대만 등이 있으며, 이중 법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 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3개국 뿐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아예 집중투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8) 전삼현, 누적투표제, 회사법의 쟁점, 자유기업원 (1999.2), 130면 참조.

3. 감사위원 분리선임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인 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시 특수관계인 포함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따라서 감사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만 3%룰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는 별도로 선임하고, 이들 선임 시 특수관계인 포함 3% 의결권 제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도 3인 이상인 감사위원 중 사내이사 선임 시에만 별도로 선임하고 3%룰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향후 국내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자체를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즉, 대부분 국내 상장사들의 이사회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은 이질적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며, 그 중에서 상당수는 외국계 투기펀드가 지지하는 인사가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민감한 경영전략까지 외국계 투기자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회란 상호견제보다는 모험적 경영판단을 함께 감수하는 위험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그 기업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을 무책임경영으로 내몰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감사위원들 선임 시 3%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서 향후 기업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가들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4. 전자투표 실시 의무화

현행상법 제368조의4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미흡하다는 전제하에 법무부는 금번 상법개정안에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⁹⁾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참여 미흡은 오랜 기간 동안 회사법의 과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제368조 제3항), 서면투표(상법 제368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주주의 총회 참여가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상법 개정안의 전자투표 강제화는 이러한 소수주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전자투표 실시 강제화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적 결함으로 인하여 경영권의 왜곡화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입법안의 취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수주주들의 경영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자투표 실시 강제화는 자칫하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초래하는 입법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회사마다 전자투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만일에, 해커 등이 전자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 경영권은 물론이고, 회사의 의사결정 모두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투자의 유인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안 역시 향후 IT기술의 발전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입법화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9) 이에 대하여 상세히는 김병태,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전자투표제도), 고시계 (2010.12), 39면 참조.

IV. 결어

이번 상법개정안은 회사법의 본질인 주주권(株主權)을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국내 상장사 대부분과 6000여 비상장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위협하는데 도움만 주는 입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는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 지주회사의 지분을 1%만 소유하며 자회사는 물론이고 손자회사, 증손회사의 경영진을 상대로도 책임추궁이 가능할 수 있어 경영권 위협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역시 과거의 경험을 보건대 외국계 투기펀드들의 경영권 위협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피해가 적었으나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는 경우 국내 상장사 대부분에게서 “SK vs 소버린” 사태가 빈번히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안이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를 얻도록 한 것 역시 이사회 구성자체를 대립구도로 이끌어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국내 상장사 대부분을 무책임경영으로 내몰고, 급기야는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참여권보장안 역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큰 제도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근로자복지향상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사업주 등이 무상 출연하여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상출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를 주저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주 대상기업 중 1% 미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 개정이 오히려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외이사 임기도 6년으로 제한하는 것 역시 경영효율성보다는 “자리나눠먹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김종인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조속히 폐기하고, 주주와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본다.

<정책토론회> 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토론

최근 상법개정안에 대한 관견

김 선 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살핌

■ 제안이유에서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

- 그러나 “경제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이고 위험, 헌법의 최고 가치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 보장과 자유로운 시장경제이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드는 경제민주화가 아님. 이 법안의 저의가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취지라면 공감할 수 없음.

■ 기본적으로 상법은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법이지, 특정한 이념을 실현하거나 특정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법률이 아님.

- 개정안은 상법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음.

■ 개정안의 상당수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등 세계적인 입법추세와 맞지 않음. 다중 대표소송 등은 기업별 법인격의 독립성에도 위배. 현행법상 모회사 관계에서 모회사의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자회사 이사에 대한 경영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회사 이사들은 자회사에 대한 적절한 경영통제를 하여야 하므로 모회사 주주는 모회사 이사를 상대로 자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모회사 이사들의 업무해태 및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 제안이유에서 경제의 틀을 바꾸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현실진단에 대하여도 의구심.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미 2013년 7월 법무부가 작성하였던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동 개정안은 폐기되었음. 이를 다시 꺼내 들고 국민적 공감대 운운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음.

- 균형 있는 시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하고 대중영합적 표몰이 정책에 몰두, 차후의 대선 등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아닌가 의문. 최근 중남미국가의 경제파탄과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에서 보듯이 대중영합의 결과는 혹독함.

■ 제안이유에서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아 현행법상 모회사 주주가 직접 권리 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는 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다양한 경로로 묻고 있는 현행법상 적절하지 않은 지적임. 과도한 소송이 초래할 경영불안과 특히 걸핏하면 온갖 법적 수단을 남용하는 외국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염려. 모회사주식의 1%이상을 가진 주주가 손해배상(주가 하락, 이익배당률 저하, 자본잠식)보다는 경영권 다툼을 위해 대표소송을 악용할 가능성. 더구나 개정안 제406조의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은 소제기 후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합병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소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회사 지주기간 요건도 의미가 크게 퇴색되는 등 문제. 책임추궁방법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경영안정을 도모할 법적 장치를 먼저 강화할 필요.

■ 제안이유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도 공감하지 않음. 실제로 상법 제정 시 도입된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수십년 간 그 적용사례가 없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보, 제일은행 사건 등 현실화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은 D&O 보험가입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임

■ 제안이유에서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나, 사외이사가 무소불위의 무제한적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규제대상권력이 되며, 신한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내분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평판가치를 저해할 위험.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상당히 강한 규제가 실현되고 있음. 동법은 2016. 8. 1. 시행예정이며 상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제4조), 최근 시행령이 입법예고 된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상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와 같은 특히 문제가 불거진 특정 산업분야가 아닌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문제의식의 지나친 일반화임. 법시행(2016. 8. 1.)의 경과를 보고 법률의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진 후 새로운 입법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위에 지붕을 다시 짓는 입법의 낭비, 국회 스스로 얼마 전(2015. 7. 1) 통과시킨 법에 대한 자학적 자기 불신이며, 엉터리 법을 만들었다는 자기 고백

■ 제안이유에서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

그동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하여 감사선출시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왔고 더 나아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과연 이와 같은 조항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반추해 볼 필요.

■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고 비판.

어떤 회사가 집중투표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다수주주의 뜻에 따른 것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임. 더구나 KT&G사건 등 집중투표가 주주제안된 사례들을 보면 집중투표가 건전한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장치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더구나 상근감사위원은 이사의 직을 겸하는 현행 상법의 구조에서 적대적인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라는 것은 독일 주식법을 참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임.

■ 전자투표제도에 대하여는 과학의 발전이 회사제도의 개선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봄. 그러나 그에 앞서 소수주주는 총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는가? 한국의 소수주주는 Wall Street Rule을 외면하는가? 무엇이 소수주주의 복리인지가 정리되어야 함.

■ 제안이유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고 이 중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이 선임을 요구한 사외이사 후보 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다액출자자의 고유권한에 대한 완전한 탈취에 해당하며 기업 갈등을 부추기는 것임.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는 과연 이들이 직접적인 경영통제를 하여야 할 이해관계자인지 알 수 없으며, 역으로 왜 이해관계자를 이들로만 한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임.

■ 결론적으로 상법개정안은 이미 2013년에 폐기되었던 법안을 재론하자는 낭비적 제안이며, 국민공감대라는 모호한 말로 기업을 압박하고, 기업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가치중립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상법에 이념적 편향성으로 도색하는 정치적 입법이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세계적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금융시장지배구조법 등 국회가 해온 입법 활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임.

바람직한 상법개정안 추진방향 모색

신 석 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

1. 현황 및 개정안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16.6)에서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해 상법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후 법안발의('16.7.4)

* ① 감사위원 분리선출 ② 집중투표제 의무화 ③ 사외이사 선임 및 자격요건 강화 ④ 전자투표제 의무화 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 = 이사의 선출방법①② +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③ + 소수주주 참여촉진④ + 소수주주들에 의한 경영진 책임추궁 강화⑤ = **경영 민주화** = **지배주주권한 통제를 위한 소수주주 권한강화**

- 개정안은 ①감사위원 분리선출과 ②집중투표제와 같은 이사의 선출방법을 통해 이사회 구성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③사외이사 결격요건 확대와 근로자 및 소액주주들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출권 도입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외이사가 선출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고 보아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 사후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를 위해 ⑤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

【표】 상법개정안의 내용 및 검토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	현행	· 전체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일괄선임하고 이들 중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의 주총에서 다시 선임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일괄선임)
	개정안	·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의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임 · 감사위원회 될 이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분리선임)
검토	· 현행 일괄선임보다 분리선임이 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 ·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하부위원회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이사)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 (미국) · 감사위원회 위원을 현행법처럼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데 분리선출까지 의무화 할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 · 보호하고자 하는 소수주주가 아닌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큼 · 대주주 전횡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 때문에 회사제도의 본질인 주주의 이사선임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	현행	· 집중투표제가 개별 회사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만 도입을 원하지 않는 개별 회사들은 정관변경을 통해 배제가능(opt-out 방식) ·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2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개정안	· 2인 이상 이사 선임시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자에게 집중시켜 줄 수 있는 집중투표 의무화
검토	· 3개 국가에서만 의무화(칠레, 멕시코, 러시아) ·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고 주주평등, 다수결 원칙 위배 · 현행방식(‘opt-out’ + 대주주 3% 제한) 하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하려면 대다수 소수주주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현행법만으로 소수주주 보호충분 · 현행방식은 그 방식이 엄격해 ‘실질적’으로는 강행규제와 유사하므로 더 이상 강제화하려는 것은 문제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내용	현행	· 상장회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 등 사외이사 결격요건 엄격
	개정안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 사외이사 결격요건 확대 · 근로자 회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의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출권 도입
검토		·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경영실적 간 상관관계에 대한 일관된 실증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음 ·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에만 치우쳐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이사회 운영이 어려움 · 사외이사 인력풀 부족으로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유능한 사외이사 충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자의 선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 · 근로자 추천 사외이사 선임강제(근로자 경영참여)는 유럽식 지배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럽에서도 근로자 경영참여가 약화추세에 있고 상당수의 유럽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 경영참여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자투표제 의무화		
내용	현행	· 개별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 가능
	개정안	·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정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에게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검토		·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 효과 불확실하여 전자투표제를 강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 주주가 참석하여 의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문과 토론을 한 후 자기 의사를 결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총회의 회의체 성격을 형해화 시킬 우려 · 본인확인 절차 등에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해킹 등 보안문제 발생 위험 · 악의적 루머로 인한 투표결과의 왜곡 가능성 존재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내용	현행	· 현재 단순 대표소송만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다중 대표소송을 해석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 대립
	개정안	· 모회사(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 할 수 있음
검토		· 캐나다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 입법화 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심사청구 적격을 일정 범위의 자에게 허용한다는 의미일 뿐 소송 개시 및 계속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 · 실질적으로 입법화한 유일한 나라는 일본이나 엄격한 요건(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의 1/5을 초과해야) 요구 · 회사법의 근간인 ‘독립 법인격’ 체계 훼손 및 외국계 투기 자본에 의한 악용 위험 · 명시적으로 입법화 하지 않더라도 독립 법인격이 명백히 불법적으로 악용되었을 경우 판례법상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일반 주주대표소송으로도 다중대표소송과 유사한 효과 가능

2. 외국계 투기펀드에 의한 악용 가능성

[이사의 선출 방법]

외국계 투기자본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이사회’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손쉽게 진출시킬 수 있음

○ A사 이사회 구성 예시

(7명)=	일반 이사	사내(2) + 사외(2)
	감사위원인 이사	사내(1) + 사외(2)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①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넘어야 함 ②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감사위원회 위원은 3명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2/3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함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로 감사위원이 될 이사 손쉽게 선출 가능

○ 감사위원이 될 사내·사외이사를 일반이사와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시 의결권 3%로 제한

	감사위원이 될 사내이사 (1인)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2인)
의결권 3% 제한 방법	◦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3%로 의결권행사 제한 [합산 3%를] ◦ 그 이외의 주주들은 개별 주주별로 3%로 의결권행사 제한	◦ 모든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3%로 의결권 행사 제한 [단순 3%를]
가상사례	동일인측 30% : 총수 10%, 특수관계자 20% (a 5%, b 8%, c 7%) ◦ 동일인측 3%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 (30%지분 중 27%는 의결권 상실)	◦ A사의 총수일가(동일인측) 12%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 (4인×3%)

○ 총수일가는 ‘3%를’규제로 실제 보유지분보다 훨씬 적은 의결권 행사만 가능

- 반면, 외국계 투기자본은 ‘지분 쪼개기*’로 ‘3%를’규제를 회피하며 모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위원이 될 3인 이사 선출이 수월

* 보유지분을 3%씩 여러 개의 펀드로 쪼개 ‘3%를’규제 회피

○ 주요 기업 동일인측 및 외국인 지분율격차 [재벌닷컴 발표(2015.6.4.)]

	회사명	동일인측	외국인	지분율격차
1	SK하이닉스	21.09	53.29	-32.19
2	삼성전자	29.57	51.82	-22.25
3	호텔신라	18.53	39.09	-20.56
4	삼성화재	30.94	51.37	-20.43
5	현대모비스	32.02	50.16	-18.13
6	에스원	31.60	47.82	-16.22
7	삼성물산	19.63	33.08	-13.45
8	현대차	31.96	44.44	-12.48
9	삼성SDI	20.50	29.25	-8.75
10	SK텔레콤	37.37	44.55	-7.18
11	GS홈쇼핑	34.93	40.13	-5.20
12	실리콘웍스	34.25	39.42	-5.18
13	LG화학	34.08	39.11	-5.02
14	기아차	36.71	38.44	-1.73
15	SK이노베이션	33.97	35.52	-1.55
16	LG상사	12.20	13.17	-0.97

□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일반이사 선출용이

[사외이사 선임요건 및 자격 강화]

이사회 과반수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고 근로자 및 소수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투기펀드가 선호하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가능성 증가

[전자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를 통해 일부 소수주주들이 여론몰이 등을 통해 현재의 경영진에 반대하는 세력을 결집하기 용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업집단, 특히 지주회사 체제를 위협

○ '14년 현재,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5.9%(상장 43.2%, 비상장 84.7), 76.5%(상장 45.7%, 비상장 78.0)

○ 다중대표소송 제기기 가능한 모자관계(50%이상 보유)를 상회

3. 재벌 의사결정 민주화 = 경영민주화 ≠ 경제민주화

□ 경영 민주화를 위해 지배주주 권한제한, 이사회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한 강화 등에 만 초점이 맞춰진 상법개정안은 단기실적주의를 부추겨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추구해야만 달성 가능한 경제 민주화에 역행 우려

○ 상법개정 논의에서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수주주권 강화로 초래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 그리고 이로 인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침해 가능성도 항상 고려해야 함.

- 투기자본의 지나친 단기주가 상승요구와 배당요구가 강해질 경우 장기투자를 위한 여력은 하락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기반을 둔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단기 주가상승을 통한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가지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재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일부 주주들의 단기 이익 추구하고 지나친 배당요구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가능함.

▶ 과거 KT&G는 지배주주가 없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제도 등 소수주주 보호장치들을 가장 잘 갖춘 지배구조로 평가 받으며 2000년 초 시민단체로 부터 최우수 기업지배구조상을 받으며 재벌개혁의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

▶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칼 아이칸'은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장치들을 활용하며 KT&G 경영권을 위협

▶ KT&G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라고 요구

▶ KT&G 경영진은 부동산을 서둘러 매각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발 후 매각하는 것이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해 봤지만 소용없었음.

▶ 칼 아이칸은 배당을 늘려 받고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면 그만

▶ 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바란다면 칼 아이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됐지만 소용없었음.

▶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한 푼도 남김없이 모두 주주들에게 배당

▶ 당시 주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은 주주이익에 충실한 이러한 행동을 바람직한 경영이라고 칭찬

▶ 어쨌든 주주의 단기이익은 극대화 시켜 주주이익에 충실했으므로 바람직한 경영일까?

□ 경영권 남용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번 상법개정안의 한계를 넘어, 앞으로의 상법개정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고민하며 ‘경영권 남용억제’와 ‘경영권 안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면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이 통제되고 회사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증진되는가? 혹시 소수주주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없는가?

- 여기서 소수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든 소수주주들의 이해관계는 동일한가?

-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하여 적대적 M&A를 활성화 시키면 기업가치는 증가하는가?

- 적대적 M&A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수주주의 권한이 강화되면 일부 주주가 이를 악용해 지나치게 단기시세차익만 요구하여 회사의 장기적 성장동력이 훼손될 위험은 없는가?

- 오너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안정된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주는 물론 그 회사,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더욱 바람직한 것 아닌가?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